##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34 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양부남・박지원・정진욱

전현희 · 정준호 · 이재관

안규백 · 강준현 · 서삼석

민형배 • 박해철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·근무성적,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, 장애인·이공계전공자·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채용·승진·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6 조).

법률 제 호

##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단서 중 "저소득층"을 "저소득층 · 다자녀양육자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임용의 원칙) 공무원의 임	제26조(임용의 원칙)
용은 시험성적・근무성적, 그	
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	
다. 다만, 국가기관의 장은 대	
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 <u>저</u>	<u>저</u>
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·승진	소득층 · 다자녀양육자
•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	
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	
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	
시할 수 있다.	